

서울남부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9459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9. 4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성희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3.07.24. 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5. 8. 8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부수진	건물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0.12 ~	249,000,000		2021.10.12	2021.09.03		
이다영	203호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미상	미상	미상	2024.12.26	미상		
주택도 시보증 공사	203호 전부	권리신고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0.12 ~ 2023.10.12	249,000,000		2021.10.12 (부수진)	2021.09.03	2025.4.4.	
<비고> 부수진 :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.10.05.임 주택도시보증공사 : 주택임차권자 부수진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일은 경매신청일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 - 임차인 부수진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,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9459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2-2, 273-6
다원리치빌3차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1길 66-44

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다세대주택)
1층 8.4㎡
2층 90.26㎡
3층 90.26㎡
4층 90.26㎡
5층 69.23㎡
옥탑1층 13.86㎡(연면적제외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층 제203호
철근콘크리트구조 23.0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2-2
 대 154㎡
 2. 동 소 273-6
 대 79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, 2. 233분의 19.869

감정평가액		206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5.10.23	206,000,000	20,600,000
2회	2025.11.26	164,800,000	16,480,000
3회	2026.01.21	131,840,000	13,184,000
4회	2026.03.11	105,472,000	10,547,200
-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 기 조건 매각			